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4호의5서식] <개정 2020. 5. 27.>

고형연료제품 [ ] 수입 [ ] 제조 신고확인증

1. 신고번호 : 제 호

2. 상 호 : (사업자등록번호:)

3. 대 표 자 : (생년월일:)

4. 사업장 또는 제조시설 소재지 : (전화번호:)

5. 고형연료제품의 종류

일반 고형연료제품	바이오 고형연료제품
[ ] 성형, [ ] 비성형	[ ] 성형, [ ] 비성형

6. 고형연료제품의 원재료의 종류 및 구성비율

7. 고형연료제품의 연간 예상 수입량·제조량

가. 수입신고의 경우

연간 예상 수입량(톤/년)	수입유효기간	제조업체명(국가)

나. 제조신고의 경우

연간 예상 제조량(톤/년)	연간 가동일수(일/년)	일일 가동시간(시간/일)

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의4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형연료제품의 수입·제조신고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지방환경관서의 장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직인

210mm×297mm(백상지 120g/㎡)